

2022학년도

전북여자고등학교 악업성적관리 규정

2022. 03.



가고 싶은 학교 꿈이 있는 학교

全北女子高等學校

학업성적관리 규정

I 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1.17.)에 따라 본교 교육의 이념 구현을 위한 전인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활동의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과정을 올바르게 측정함으로써 본교 교육의 개선 및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II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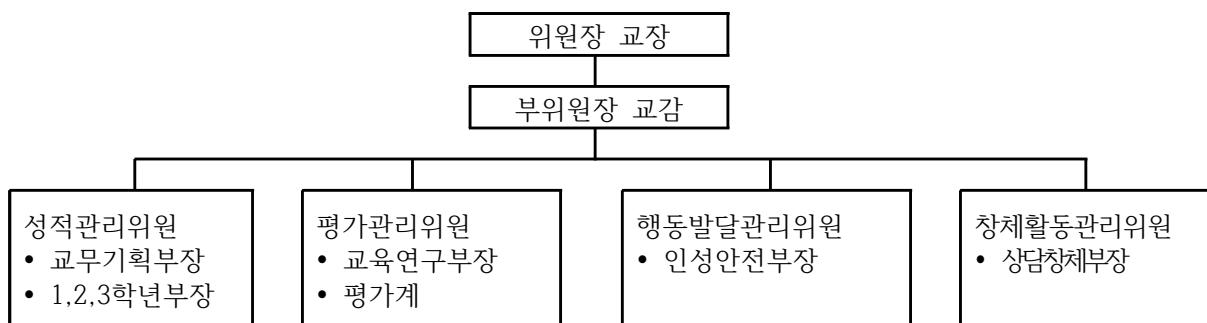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전북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기록부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 및 착 평가를 실시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①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목명에 실험, 탐구, 연구가 포함된 과목**)
 - ②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 ③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기초교과 및 탐구교과는 제외**)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과목
 - 나. 시수가 적은 과목(1단위)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지필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학기당 지필평가를 1회만 실시하는 과목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40% 이상’으로 정한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 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결재,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전라북도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원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0.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1.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협의회의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은 교육청의 별도 지침 및 평가관리 위원회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III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 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교감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성적관리 분과위원장은 교무기획부장, 평가관리 분과위원장은 교육연구부장(간사), 행동발달관리 분과위원장은 인성안전부장, 창의적체험활동관리 분과위원장에는 상담창체부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1, 2, 3학년부장, 평가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 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마.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협의회는 교과별(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가정, 예술·체육)로 구성한다.
 - 나.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IV 평가의 목표 · 내용 및 방법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재 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V 지필평가

1. 평가문항 출제

- 가.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별지 1, 별지 2)
- 다.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 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하여 공동 출제한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열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 마.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2)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3)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5)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6)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 7)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 바. 지필평가 중 서답형 총 배점 비율은 30%이상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 서답형 :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 사.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 *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1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30%
-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40%
-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평가요소별 배점 등)

- 자.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별지3)**
- 차.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등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 카.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협의회에서 계획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여 본교는**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별 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국어과

과 목 명		국어(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독서	② 표현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5월 중		7월 중		수시	6월 중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11월 중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목명		한문(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① 부수(1학기) /삼강오륜 (2학기)	② 고사성어	③ 활동지 정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3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30%	
기본점수	0	0		8점	8점	12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4월	6월	수시
	2학기	12월			9월	11월	수시
출제-평가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화법과 작문(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독서 및 표현 활동	② 포트폴리오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5월 중		7월 중	3월 중	3월~6월 중	3월~6월 중
출제-평가 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실용 국어(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주제표현활동	② 포트폴리오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8월 중		10월 중	9월 중	8~11월 중	9월 중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심화 국어(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주제표현활동	② 포트폴리오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8월 중		10월 중	9월 중	8~11월 중	9월 중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학률과 통계(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배움평가	② 역량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10월 중		12월 중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수학과제탐구(2학기)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수학과제탐구의 이해		②포트폴리오		③독서활동			
영역만점		40점		40점		20점			
반영비율		40%		40%		20%			
기본점수		16점		16점		8점			
평가시기	2학기	8, 9월		학기 중 수시		8, 11월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미적분(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배움평가 (서술·논술)	② 역량평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2학기	10월 중		12월 중	학기 중 수시	학기 중 수시			
과 목 명		경제수학(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배움평가	② 역량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이하	30%이상 (20점이상)	70%이하	30%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단원 마무리 학기 중 수시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심화수학 II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선택형 영역만점		① 서답형 30점 이상 (20점 이상) ② 배움평가 40점 ③ 역량평가 3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40% 30%	
기본점수		0점		16점 12점	
평가시기	2학기	8월 중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영어과

과 목 명		영어(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수업참여	② 쓰기	③ 듣기	④ 읽기 및 말하기	
	선택형 영역만점	선택형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21%	9% (6%)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5월	7월 중	수시	수시	4월	6월-7월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수시	9월	11월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영어 I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발표 및 학습활동	② 듣기	③ 쓰기		
	선택형 영역만점	선택형 30점 (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21%	9% (6%)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4월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영어 II(2학기)					
평가방법	지 편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발표 및 학습활동	② 듣기	③ 쓰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21% 9% (6%)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9월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영어독해와 작문(1,2학기)					
평가방법	지 편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읽기 및 학습활동	② 쓰기	③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수시	수시	
2학기	8월 중	10월 중	수시	수시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심화영어 I(1,2학기)					
평가방법	지 편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발표	② 학습활동	③ 듣기	④ 쓰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21% 9% (6%)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중	7월중	연중	연중/ 매월 4주	4월	매월 3주
2학기	8월중	10월중	연중	연중/ 매월 4주	9월	매월 3주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일본어I(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① 쓰기	② 말하기	③ 문화주제탐구(1학기)/ 읽기(2학기)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30%	20%	2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중	수시	5월 넷째 주	6월 셋째 주
	2학기	10월 중	수시	8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과 목 명		중국어I(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① 쓰기	② 말하기	③ 문화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30%	20%	2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중	수시	5월	6월
	2학기	10월 중	수시	9월	10월

사회과

과 목 명		통합사회(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프로젝트	②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학기중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통합사회(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프로젝트	② 보고서 작성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2학기	10월 중		12월 중		학기중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사회탐구방법(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독서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5-6월	5-6월 중
						6월 중	

과 목 명		한국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②		2차고사(30%)①		① 포트폴리오	②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 중		7월 중		4월, 6월 3월 3주	3월 4주 5월 2주, 4주
	2학기	10월 중		12월 중		9월, 11월 10월 3주	8월 4주 11월 2주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세계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 중		7월 중		4월, 6월 6월 3주	5월 2주 6월 1주	수시
	2학기	9월 중		12월 중		9월, 11월 10월 4주	8월 2주 9월 2주	수시

과 목 명		경제(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독서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21%	9% (6%)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3-4월	5-6월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9-10월	10-11월

과 목 명		사회·문화(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독서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5-6월	5-6월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9-10월	9-11월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국제경제(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① 서술형평가	② 주제탐구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4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9% (6%)	40%	20%	1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중		수시	수시	수시

과 목 명		한국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 중			7월 중	4월, 6월 4월 3주	5월 3주	수시
	2학기	8월 중			9월 중	9월, 10월 10월 1주	9월 1주	수시

과 목 명		동아시아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포트폴리오	②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이상)	21% 이하	9% 이상 (6%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4, 6월	4월 1주	수시
	2학기	8월 중			10월 중	9, 10월	9월 1주	수시

과 목 명		사회문제탐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팀구역량	②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5월 중		7월 중		수시	수시
	2학기	8월 중		10월 중		수시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		① 포트폴리오	② 팀구역량	③ 독서활동	④ 수업참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7월 중	8점	8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수시	5월~6월	5월~6월	수시	
출제-평가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30%)		① 포트폴리오	② 팀구역량	③ 독서활동	④ 수업참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월 중	8점	8점	8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수시	8월~9월	9월~10월	수시	
출제-평가 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3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세계지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② 자료분석 평가	① 지리 프로젝트 (논술형)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월~5월 중		7월 중	3월 중	6월 중	
	2학기	8월 중		10월 중	9월 중	9월 중	

과 목 명		고전과 윤리(1,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팀구역량 평가	② 수업 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5월 중		7월 중	수시	수시	4,5,6월 중
	2학기	8월 중		10월 중	수시	수시	8,9월 중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현대세계의 변화(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① 서술형평가	② 주제탐구	③ 학습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4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40%	20%	1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중			수시	수시	수시

과학가정과

과 목 명		통합과학(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출제·평가 기준	4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 채점			4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과학탐구실험(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 과제연구	② 연구보고서	③ 토론발표	④ 협업태도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수시				

과 목 명		가정과학(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수업밀착형 평가	② 포트폴리오 (보고서 및 발표)	③ 주제별 표현활동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6월 중	6월 중
	2학기	10월 중		12월 중		10-11월 중	9-10월 중
출제-평가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 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물리학 I (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화학 I (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생명과학 I (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지구과학 I (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융합과학탐구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 탐구계획서	② 연구보고서	③ 토론발표	④ 학습활동	
영역만점	20점	4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20%	40%	30%	10%	
기본점수	5점	10점	5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과 목 명	물리학 II(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화학 II(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생명과학 II(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지구과학 II(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1% 이하	9% 이상 (6%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3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수시		
	2학기	10월 중		12월 중		수시		

과 목 명		생활과 과학(1,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학기		2학기		① 자유탐구	② 수업밀착형 평가		
		1차고사		1차고사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2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2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6% 이상)	9% 이상 (6% 이상)	21% 이하 (6% 이상)	9% 이상 (6% 이상)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수시			
	2학기			8월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출제 및 공동 채점				2인의 교사가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고급 생명과학(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① 서술형평가	② 주제탐구	③ 학습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4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40%	20%	10%	
기본점수		0점		14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중		수시	수시	수시	

1학년 예체과

과 목 명		미술(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감상 및 체험
영역만점		40	40	20
반영비율		40%	40%	20%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3-4월	4월	5-6월
	2학기	8-9월	9월	10-11월

과 목 명		음악(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가창	②기악	③감상
영역만점		35점	35점	30점
반영비율		35%	35%	30%
기본점수		14점	14점	12점
평가시기	1학기	3월 중	6월 중	5월 중
	2학기	9월 중	10월 중	11월 중

과 목 명	체육(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영역만점	20	20	30	30
반영비율	20%	20%	30%	30%
기본점수	8점	8점	12점	12점
평가시기	1학기 2학기	5월 중 10월 중	6월 중 11월 중	6월 중 11월 중

2학년

과 목 명	음악(1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표현(민요)	②표현(합창)	③표현(기악)	
영역만점	30	40	30	
반영비율	30%	40%	30%	
기본점수	12점	16점	12점	
평가시기	1학기 2학기	4월 중	6월 중	3월 중

과 목 명	음악(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①표현(라디오드라마) 발표	②생활화(공연기획) 참여도	③생활화(공연기획) 발표	④생활화(공연기획) 참여도
영역만점	30	20	30	20
반영비율	30%	20%	30%	20%
기본점수	12점	8점	12점	8점
평가시기	2학기	9월 중	11월 중	

과 목 명	운동과 건강(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2단 출렁기	건강의 관계 윗몸 일으키기	건강관리 농구(1학기)/ 배드민턴(2학기)	건강관리 무용
영역만점	20	20	30	30
반영비율	20%	20%	30%	30%
기본점수	8점	8점	12점	12점
평가시기	1학기 2학기	6월중 10월 중	5월중 11월 중	6월중 11월 중

3학년

과 목 명	운동과 건강(1,2학기)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2단 출렁기	건강의 관계 윗몸 일으키기	건강관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1학기)/ 배드민턴(2학기)	
영역만점	20	40	40	
반영비율	20%	40%	40%	
기본점수	8점	16점	16점	
평가시기	1학기 2학기	6월 중 9월 중	6월 중 9월 중	6월 중 10월 중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과목별 평가영역의 비율 및 학기당 지필 평가를 1회만 시행할 때의 수행평가 비율을 명시하며 단, 명시된 평가비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교과협의회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과 목 명	수학 II(1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80%				20%	
평가영역	1차고사(40%)		2차고사(40%)		① 배움평가 (서술·논술)	② 관찰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상 (8%이상)	28%이하	12%이상 (8%이상)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미적분(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80%				20%	
평가영역	1차고사(40%)		2차고사(40%)		① 배움평가 (서술·논술)	② 관찰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상 (8%이상)	28%이하	12%이상 (8%이상)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10월 중		12월 중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경제수학(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70%				30%	
평가영역	1차고사(35%)		2차고사(35%)		① 배움평가	② 역량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반영비율	24.5%이하	10.5%이상 (7%이상)	24.5%이하	10.5%이상 (7%이상)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단원 마무리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심화수학 I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70%			30%		
평가영역	1차고사(35%)		2차고사(35%)		① 배움평가 (서술,논술) ② 역량평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상	28%이하	12%이상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 5월 중	7월 중	학기 중 수시	학기 중 수시	
출제-평가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 및 공동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논의 후 객관적인 평가방법 결정		

과 목 명	가정과학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60%)		① 수업밀착형 평가 ② 포트폴리오 ③ 주제별 표현활동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미실시	미실시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미실시	미실시	42%이하	18%이상	20%	10%	10%
기본점수	미실시		0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미실시	7월 중	수시	6월중	6월중	
	2학기	미실시	12월 중	수시	11월 중	11월 중	

2. 고사 관리 방법

가.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 1)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 평가담당교사가 인쇄를 의뢰한다.
- 2) 평가 관련 교직원은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3층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 인쇄실, 3층교사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교감, 교육연구부장, 평가계 및 인쇄관리 담당자를 책임자로 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친·인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4)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인쇄실)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고사 시행

- 1)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시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고사 시정표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훼손된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새 답안지에 해당 학생이 옮겨 적는다.
- 3)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 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와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가 감독을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4)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 본교는 분반하지 않고 1인 감독으로 실시하되 복도감독을 배치한다.**

5)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선택형 답란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사용
- 서답형 답란 : 흑색 볼펜 사용(연필 또는 흑색 이외의 펜은 사용 불가). 연필 또는 흑색 이외의 펜을 사용하여 답란을 작성한 문항에 대해서 지도한다.
- 답안지 정정 : 고사종료 10분전까지 학생이 원할 경우 새로운 답안지를 교체해 주거나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한 경우, 수험생은 감독확인란에 수정번호와 건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 지각생 처리규정 : 종료령 이전까지 등교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 단,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 시작 전 감독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고사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PMP, MP3, 전자사전, 무전기,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7)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정행위 유형]

-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흡여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 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행위 예방조치]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시험 종료후 서명 날인)
-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행위 처리]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 8)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평가관리실에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즉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9)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10) 평가업무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채점하게 한다.
 - 11)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인정(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최종 고사 종료일 이후 3일 이상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후 확정 정답을 발표한다.)
 - 12) 학생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출제자(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에게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학생이 추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1)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각 교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지정장소 이외로의 반출을 절대 금한다.
-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교사 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필평가 결과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성적고지 후 3일까지로 한다.
- 5)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 6)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7)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고사 결과물(답안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형 채점기준표 포함)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성적 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하여야 한다.

VI 수행평가

1.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 목별·평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듣기 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체육·예술 교과(군)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성적고지 후 3일까지로 한다.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지필평가가 없는 수행100%)의 다른 영역(유사영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학생의 장애정도를 보아서 협의하여 심의한다.)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 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듣기·말하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간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를 의미
- 차. 수행평가 결과물은 매학기 종료 후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1년간 보관한다.
- 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독서 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 수행평가 총점의 20% 내외를 교과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 권장한다.
 - 학년별, 교과별로 평가 요소를 다양하게 정하여 실시한다.
 - 반영 방법 :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여부는 국어과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VII

인정점 부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별지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를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기 내에 자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별지 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학기 도중에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동일(유사) 과목)을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한 성적(동일(유사) 과목이)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동일한 과목은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동일과목이 없을 시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며 유사과목이 없을 시 [별지4]2.-라 항에 따른다.
- ※ 수행평가의 경우, 복학 및 재입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4. 휴학, 유예, 면제 등의 사유가 끝나 재취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5. 전학생이 집중 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거나 중복 이수하게 될 경우 ‘1, 2’항에 준하여 정한다.
 6.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자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출결관리사항 참고)의 인정점 부여
별도의 시험실은 미제공하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기준점수의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 인정점 부여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가능

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정기고사(해당고사) 시점에 적용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VIII 학업성적 결과 처리

-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양교과(군)의 과목'과 '나~마'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육부 고시 외 과목 포함)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교과Ⅱ,Ⅲ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라.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마. 고등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오프라인, 온라인, 학교연계 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단,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분포비율’을 산출,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하고 교양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등급에 ‘P’처리를 한다.

-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일반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 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 교양/ 체육·예술	○	○	-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별 3단계 또는 5단계	○	‘·’ <u>또는</u> <u>○등급</u>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전문 교과 I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표기로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모든 과목(전 학년))에 ‘석차등급’란에 ‘·’ 표기로 입력한다.
-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자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보통교과]

2022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석차 (동석차수)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0	95	A	1	4(15)/532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0	71	C	5	273/5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전문교과Ⅱ]

2022학년도 제1학기
상업 경제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진로 선택 과목]

2022학년도 제1학기
실용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B(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부포비율										A(30.2) B(45.3) C(24.5)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 \times 95 / 100 = 28.50)$ 은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OOO 환산점수 $8.80(10 \times 44 / 50 = 8.80)$ 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전문교과 II, III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성적일람표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은 ‘전문교과 II’의 방법을 준용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cdots$ 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학업중단 학생(자퇴, 제적, 휴학)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4.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5.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평정하며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방식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가. 고정분할점수 적용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적용 교과목	
		1학년	한문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3학년	중국어, 일본어

나. 변동분할 산출 및 적용

- 1) 분할점수 산출은 평가문항이 확정된 후 평가 실시 이전에 수행한다.
- 2) 산출된 과목별 분할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3) 반드시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4) 변동분할 점수 적용 교과

변동분할점수 적용 교과목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2학년	문학, 독서, 수학 I, 수학 II, 학률과 통계, 미적분,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3학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영어독해와 작문,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전문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6. 과목별 동점자(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과목 제외)는 지필평가의 ①2차고사 점수, ②1차고사 점수, ③과목별 수행평가 우선순 항목 점수, ④지필평가의 2차고사 배점(높은 배점부터 3개), ⑤지필평가의 1차고사 배점(높은 배점부터 3개) 순으로 석차를 부여하여,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4'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7.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 수를 정할 수 있다.

*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수강생 성적통합산출처리:무학년제)
- 2) 위 '1)'의 상황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
서로 다른 학년의 3개년 교육과정편성상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특정학기'에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시작학기 또는 총 이수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교과진도계획표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보아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수강생 성적분리산출처리)

- 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 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다.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퇴학, 자퇴, 제적, 휴학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퇴학, 자퇴, 제적, 휴학’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8.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다.
-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2)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나.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9.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0. 복학 및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나.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발달상황, 학적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 학생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다.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2.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의한다.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13.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전문계열 학과 설치교)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고(전문계열 학과 설치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103쪽 <예시>표 참조

※ 거점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

14.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3) 성적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나) 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의 성적처리(별지18 참고)

1) 학적

-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

가) 출결은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나) 해당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가) 성적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소속학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나)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다.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처리(「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별지18] 참고)

1)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2) 학적

가)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 나)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위 라)항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2) 출결

- 가)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에 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 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를 참조해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3) 성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 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 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참조).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

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국가 및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적교의 평가에 응시해야 함.)
- 2)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를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4)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를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직업과정 위탁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 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 다)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 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 라)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P(이수)'로 처리한다.
 - 교육과정 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을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 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가~바'항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별지18] 위탁학생, 병원학교 · 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고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 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30일 이내),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연 10일이내 인정), 「학교 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속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 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 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생리인정결석은 월 1회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 12) 코로나 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며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는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을 따른다.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 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을 학교장이 결정

-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처리한다.
-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득이한 경우(5일 이상 입원치료 등)는 결석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 담임교사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퇴원 등 서류 처리가 가능해진 날로부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 7일 이상 결석할 경우로 한다.
※ 단기결석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가 10회 이상이면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15)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15)부터 하교시각(16:30)이전에 하교한 경우
 -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1) 수업시간에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2)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3)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 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 라. 위의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 바.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한 우선 순으로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 전북여고 출결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절 차	처 리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보건실 이용	• 담임 - 교과교사 확인증 발급, 보건교사 확인		●		
	• 확인증 없는 경우		●		
교외 행사 참여	• 공공(교육)기관 공문-학부모 동의서(서면)-교장 승인			●	
	• 사설기관 요청 - 불허		●		
교외 경시대회	• 기타 사안 - 교장 승인			●	
	•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공문)	●			
	• 공공(교육)기관 공문-학부모 동의서(서면)-교장 승인			●	
자격증 시험	• 학원 및 사설기관 행사 참여 - 불허		●		
	• 학부모 동의서(서면), 수험표 사본			●	
입시 관련	•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 적성 등) - 확인증	●			
기타 출석 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협의)	●			
	• 교외체험학습: 절차 준수(연 10일 이내)	●			
	• 학업중단숙려 참여(10일 이내)	●			
	• 생리통이 심한 경우(월 1일)	●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 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가.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 나.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다. 전문교과Ⅱ, Ⅲ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라.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가. 체육·예술(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1)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2)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5. 전문교과Ⅰ 및 보통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2020학년도 1,2학년),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 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7.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8. ‘개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기재 예시>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당해 학기 관련 과목 미개설 시)

윤리와 사상: '온라인수업' 미개설과정에 참여하여 00시간(2022.00.00.-2021.00.00.) 이수함.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당해 학기 관련 과목 개설 시)

수학 I : 수학적 능력이~ <중략>~ 우수함. '온라인수업' 미개설과정(경제수학)에 참여하여 00시간 (2022.00.00.-2022.00.00.) 이수함.

9.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1)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할 수 있다.
- 2)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운영 절차 <2022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을 운영하는 경우, 학기초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학교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교과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II 예시>

6. 교과학습발달상황(일부발췌)

[1, 2학년]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평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진로 선택 과목>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XI

독서활동상황 관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입력한다.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XII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다만, 2024학년도 대입(2021학년도 1학년부터)기준 졸업생은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가능)하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주관기관명:‘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수첩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은 학교장

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 함.

6. ‘1항’의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2022학년도 1,2학년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7. ‘1’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하며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소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8. 학생이 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9.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나이스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10.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XIII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리: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수첩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 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나이스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 할 수 있다.

XIV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10의 1조)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

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음
-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XV

사정규정

1. 사정회는 전 직원이 참석하여 매 학기말 실시하며, 그 사무는 교무기획부에서 관장하고,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단, 모범학생 표창은 1, 2학기 중에 실시하며, 인성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 내용
 - 가. 1학기 사정회는 학년별, 교과별 성적 비교와 균태 상황, 교과우수상, 학업진보상, 장학생 선발 등을 심의 결정한다.
 - 나. 2학기 사정회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업종합우수상, 교과우수상, 학업진보상, 개근상, 정근상, 특별상, 기타의 포상 대상자
 - 2) 학교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 3) 졸업·진급의 유보자 결정
 - 다. 1학기 중 5월과 2학기 중 11월(3학년은 8월) 사정회는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봉사상, 선행상, 예절상, 효행상 선발 등을 심의 결정한다.
3. 사정규정
 - 가. 학업종합우수상 :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중에서 학년 또는 각 계열의 등급이 표기된 1,2학기 전교과 등급평균 석차(단위수 고려)에 따른 석차 백분위가 10% 이내인 자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나. 교과우수상 : 학기별 교과별로 석차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로 교과담당 교사가 추천한 자.
 - 다. 학업진보상 : 매 학기말 학년 또는 각 계열의 직전학기 등급이 표기된 전교과 등급평균(단위수 고려)에 의한 석차(1학년 학년 석차, 2,3학년 계열석차)가 다음과 같이 향상된 자로 학년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단, 1학년 1학기 말은 고입석차를 기준

으로 하며,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직전학기 석차가 100등 이내인 학생 중 10%이상 석차가 향상된 자
 - 2) 직전학기 석차가 101등에서 200등 이내인 학생 중 15%이상 석차가 향상된 자
 - 3) 직전학기 석차가 201등 이하인 학생 중 20%이상 석차가 향상된 자
※ 교과우수상과 학업진보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학업진보상이 우선한다.
- 라. 개근상(3개년, 1개년) : 결석, 지각, 조퇴가 하나도 없는 자.
- 마. 정근상(3개년, 1개년) : 결석이 3일 미만인 자.(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해서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 바. 특별상 : 다음과 같은 공적이 인정된 자는 담임 및 주무교사가 추천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 사정회 시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학교장상을 수여한다. (공로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예절상, 체육상, 예능상, 문학상, 과학상 등)
-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봉사상 :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는 등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4)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5) 예절상 :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이 바른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6)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7) 예능상 : 음악, 미술, 응변, 말하기, 연극 등의 예능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8) 문학상 : 문학, 글쓰기 등의 문학 분야에 특기를 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9) 과학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 특별상 중 체육상, 예능상, 문학상, 과학상은 수상대장에 입력된 교외상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교외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에 입력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사. 졸업예정자로서 외부로부터 받는 상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사정회 시 가결을 보아 학교장이 추천한다.
- 1) 전 학년 석차등급에 의한 석차가 높은 순.
 - 2)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아. 자기주도학습상
- 1)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자기 주도 학습 정의에 가깝게 공부한 학생

- (2) 학습 계획 및 점검표(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
 - (3) 자기주도학습으로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학생
 - (4) 스터디 등 협력학습을 통해 실력이 상승한 학생
- 2) 학기별로 학년 학생수 기준 10%이내의 인원을 자기주도학습 사례보고서를 참고하여 추천한다.
- 3) 학년 단위로 심의 의결하여 선발된 인원은 각 학년에서 심의 결정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상한다.

자. 모범학생 표창

모범학생 표창은 인성안전부에서 관리하며 1학기 5월과 2학기 11월 중(단, 3학년은 8월 중)에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예절상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학생을 학급별, 부문별로 각각 1명이내의 인원을 학급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상한다.

- 1)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4) 예절상 :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이 바르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차. 교내장학생

1) 해외연수 장학생

-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입학성적(고입 배정성적의 석차백분율 기준) 20% + 1학년 1학기 1차고사성적(원점수 총점기준) 40% +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성적(국어, 수학, 영어 원점수 총점 기준) 10% + 6월전국연합학력평가성적(국어, 수학, 영어 원점수 총점 기준) 각각 30%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단, 각각의 성적은 석차백분율을 반영하며, 석차백분율은 소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학년 1학기 1차고사성적>6월학평>입학성적>3월학평 순으로 선정한다. (2019.6.14. 추가)

- ③ 1학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며, 장소 및 일정은 훈정장학회의 규정에 따른다.

2) 교외장학생

- ① 교외 재단 장학생은 당해 장학 재단의 추천 요강에 의하되 성적 우수자 중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추천한다.
- ②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발한다.

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과 퇴학으로 한다.

- 1) 유급 : 질병 결석으로 총 출석일수가 출석할 일수의 2/3 미만인 자
- 2) 퇴학 : 사고 결석으로 동 학기 출석일수가 출석할 일수의 2/3 미만인 자

부 칙

1. 본 규정 중 보완될 새 규정이 필요할 때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경유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기반 구축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교육연구부장, 평가계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교사
	보안관리 계획 수립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책임자(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지정	관리자 행정실장 교육연구부장 평가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계
	연간평가계획 흥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출제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인정점 및 동점자 처리 규정, 지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출제 시 유의사항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단계별 보안관리,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예방 관련 등 연수	평가계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공동출제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교과담당
		공동 출제·검토(교사 1인 출제 경우 - 교과부장 검토)	교과담당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당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당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계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흥보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지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당
		서답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교감 교과담당 교육연구부장 평가계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문항 출제 및 고사원안 제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작성(내용영역, 성취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 등 표시) - 해당학급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교감 교과담당 교육연구부장 평가계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분할점수 산출	해당 교과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결재 및 학생 공지 (1차고사, 2차고사, 학기말)	교과담당 평가계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인쇄 및 보관	인쇄 및 보관 (보안 관리)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한 문제지, 원안, 파지 보관 철저)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실 및 3층교사연구실, 3층교무실, 각학년 교무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지정, 이중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교감, 행정실장 교육연구부장 인쇄 담당자 교과담임 평가계
시행	고사 관리 유의사항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금지 및 지도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령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교육연구부장 학급담임 학급담임 담임/감독 담임/감독 담임/감독 담당/감독
		결시생 답안지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지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또는 서명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안지 등 회수	감독
	고사감독 배정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담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 시험 감독 배치 금지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 1인 감독, 복도감독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수준에 준하여 운영	평가계 평가계 감독/평가계 평가계
평 가 후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평가계
	답안 채점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정답 수정 등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지) 학생 개인 점수 확인	교과담임 교과담임 교과담임 교과담임 교과담임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임
	성적 최종 확인	성적일람표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학급담임
	NEIS 성적 마감	학생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과목별 성적마감 처리	교과담임
	성적처리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모든 교과의 성적처리 후 마감	교과담임 연구정보계
	성적표 출력	진로진학프로그램에 성적 탑재 후 학부모 및 학생 공지	학급담임 진학지원팀
	답안지 및 성적확인 자료 보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평가계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동일교과 학급별 편차, 문항별 오답율 분석 등을 통한 수업 방법 개선 (교과협의회 후 교과협의록 작성)	교과담임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평가계

[별지 2]

2022 학생평가 시행 보안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차고사	점검일자	2022. .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출제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원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인쇄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시행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채점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기타 의견	
-------	--

[별지 3]

문화점 보표

학기 및 고사유형	교과명	총교사(인쇄관리 및 포장)	교 제	기	연구	교감	교증
2022 학년도 몇 학기 몇 차고사	교과	총점등					
대상 : 몇 학년 몇 반 ~ 몇 반			실시일 : 2022년 몇 월 몇 일 (몇 교시)				
등록번호 CPM-0000	내용설명	성취기준	난이도 •••••	종류 •••••	성적 (수급률은 총수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총 ○ 등급 ○ 등	선별점 : ○등급 ○등급 성균점 : ○등급 ○등급	% % % % % %	급1 급2 급3 급4 급5 0 0 0 0 0			

* 평균점수는 지식, 이해, 주제 등 교과의 특성에 맞게 학급마다 배분하여 “초기화”으로 표시하시고, 날이드는 배출률은
기본식 등수평균을 고려하여 어려울(상, 20%), 보통(중, 50%), 쉬운(하, 30%)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성균점 계급 기준(평균기준에 맞는 평균 계급 기준 등급)				
등급	유사 계급	평균점수	성균점 계급 기준 대비	비고
등1				
등2				
등3				
등4				
등5				
등6				
등7				
등8				
등9				
등10				
수학 평가				
순	평가 면역	평가기준	평가내용	비고
1				
2				
3				
4				

시답형 문제 채점 세부 기준표

총점(교합)

서단 1

		정답 표	■ 표
정답 체크			
정답 체크			
정답 표 ■ 정답 표			
정답 표 ■ 정답 표			

서단 2

		정답 표	■ 표
정답 체크			
정답 체크			
정답 표 ■ 정답 표			
정답 표 ■ 정답 표			

서단 3

		정답 표	■ 표
정답 체크			
정답 체크			
정답 표 ■ 정답 표			
정답 표 ■ 정답 표			

[별지 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 ◦ 제출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 결석계, 담임의견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실시 상황표 또는 결석계 작성 및 제출 ◦ 인정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서류 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인정점 부여(공결, 경조사, 생리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 등) ◦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 NEIS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일반결시]-[기준점수(과목)]-[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 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성적산출 학생 관리 ◦ NEIS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학기말 성적 산출 (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침 보관 (감사시 확인 자료임)

□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 감염병, 병원 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 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①2차, ②1차 고사 순으로 선택함.

 -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출한다.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평균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 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 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 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 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8)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 (고사기간 : 병원진료확인서 1회)
 - 단,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10)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라. 부정행위 유형의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부정행위 유형	인정 비율(인정 점수)
◆ 문제지 유출을 이용한 부정행위	◆ 0점
◆ 문제지 도용을 이용한 부정행위	◆ 0점
◆ 집단부정행위를 주도한 행위	◆ 0점
◆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 최하점의 50%
◆ 쪽지(메모)를 이용한 부정행위	◆ 이용전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이용후 : 최하점의 50%
◆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정답쪽지를 보낸 부정행위(동조자)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남의 답을 본 부정행위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정답쪽지를 받아본 부정행위	◆ 최하점의 50%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